



제1부

언론조정현황





제1부 언론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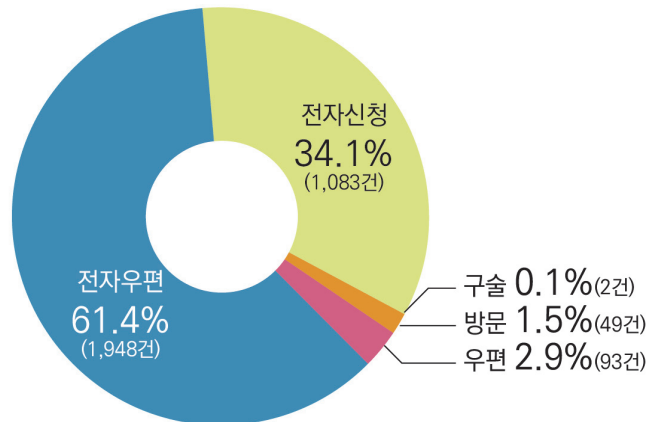
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가 2022년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총 3,175건이었다. 이를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접수된 사건이 1,948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위원회 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 1,083건(34.1%), 우편 93건(2.9%), 방문 49건(1.5%), 구술¹⁾ 2건(0.1%) 순이었다.

조정사건의 대부분인 3,031건(95.5%)이 전자우편, 전자신청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고, 방문, 구술 등 위원회 내방을 통한 신청은 51건(1.6%)에 그쳤다.

※ 2022년 접수된 중재사건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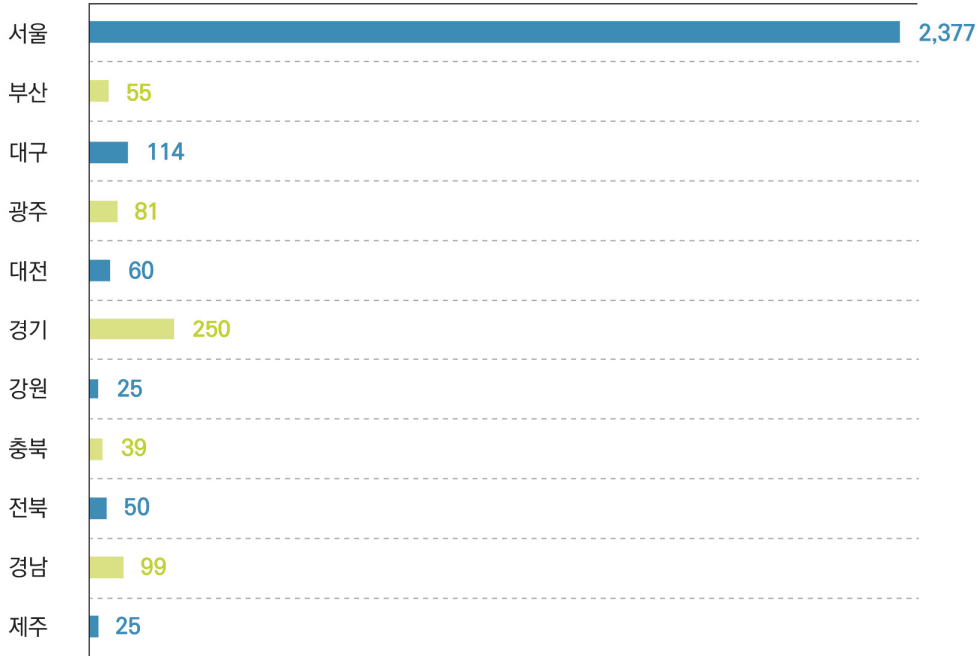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전체 3,175건의 조정사건 가운데 서울중재부(8개 중재부)가 2,377건을 접수·처리하여 전체 사건 중 74.9%를 담당하였으며, 지역중재부(10개 중재부)는 798건을 접수·처리하여 25.1%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별 중재부별로 보면, 서울 1개 중재부는 평균 297건, 지역 1개 중재부는 평균 80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250건(7.9%)으로 가장 많은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이어 대구중재부 114건(3.6%), 경남중재부 99건(3.1%), 광주중재부 81건(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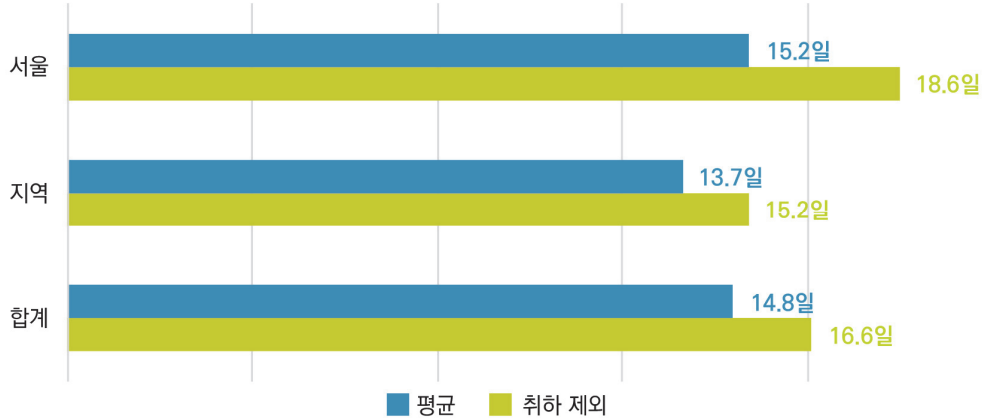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구술 신청은 신청인이 위원회에 내방하여 조정신청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다.

표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3. 조정사건 처리기간

조정사건 처리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2022년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4.8일이었다. 서울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15.2일, 지역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13.7일이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서울중재부 담당 조정사건 수가 지역중재부보다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 전 피해구제, 자진취하 등으로 심리가 개최되기 전 조정신청이 철회된 취하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기간은 16.6일로 다소 늘어났으며, 서울중재부는 18.6일, 지역중재부는 15.2일의 평균 처리기간이 소요되었다.


표 3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청구권별 조정사건은 정정보도청구가 1,432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손해배상청구 1,009건(31.8%), 반론보도청구 653건(20.6%), 추후보도청구 81건(2.6%) 순이었다.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²⁾은 67.6%였다. 청구권별로는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88.9%로 가장 높았고, 반론보도청구 70.1%, 정정보도청구 66.3%, 손해배상청구 66.2%였다.

표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432	460	33	15	345	(3)	171	62	299	47	66.3	
반론	653	207	17	6	106		127	58	104	28	70.1	
추후	81	31	1		7		6	3	32	1	88.9	
손배	1,009	251	18	13	226	(5)	146	70	251	34	66.2	
계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2)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조율을 우선하는 조정의 특성상 신청인의 본래 청구와 다른 보도 형태 등으로 합의되는 때도 있으며, 이 경우도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조정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이 1,699건으로 53.5%를 차지했고,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은 1,476건으로 46.5%였다. 개인과 단체의 피해구제율은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이 67.7%,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이 67.4%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개인 신청 조정사건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례가 520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413건(24.3%), 조정불성립결정 392건(23.1%) 등의 순이었다. 피해가 구제되어 신청인이 취하한 413건 중에는 인터넷에서 원 조정대상 기사를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열람차단이 244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열람차단이 인터넷 매체 관련 주된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92건(22.3%), 기사수정 35건(8.5%), 일부 열람차단 23건(5.6%)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429건(29.1%), 조정불성립결정 292건(19.8%),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273건(18.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후 취하로 종결된 사건 273건 가운데 열람차단이 148건(54.2%)으로 개인 취하사유와 마찬가지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기사수정 46건(16.8%), 보도게재 40건(14.7%), 당사자 간 화해 30건(11.0%) 등의 순으로 취하 사유가 많았다.

표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신청인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개 인	1,699	520	42	14	392	(8)	204	44	413	70	67.7	
단 체	1,476	429	27	20	292		246	149	273	40	67.4	
계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나.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 신청 1,699건의 조정사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정치인에 의한 신청이 258건(1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사업가 160건(9.4%), 회사원 154건(9.1%), 공무원 144건(8.5%), 교육자 118건(6.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신청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았거나, 직업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건은 483건(28.4%)이었다.

피해구제율의 경우 공공기관장, 군인·경찰, 그리고 학생이 신청한 조정사건 전체가 피해구



제 되어 피해구제율 100%로 나타났다. 군인·경찰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불성립결정이 된 2건은 사건 종결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손해배상금 지급)가 이루어져 최종 피해구제가 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85.1%), 회사원(84.7%), 고위공무원(76.8%), 전문직종사자(73.5%), 조합대표 및 협회장(68.8%)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언론인이었는데, 이들이 신청한 34건 중 단 9건(26.5%)만 구제됐고 나머지 25건(73.5%)은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개인의 직업을 공인과 일반개인으로 분류해보면, 공인이 신청한 사건은 362건(21.3%), 일반개인이 신청한 사건은 1,337건(78.7%)이었다. 피해구제율의 경우 일반개인이 68.9%, 공인이 64.4%로 나타났다.

표 6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개인 신청인 직업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치인	258	99		4	105			43	7	55.0	
공공기관장	48	28						20		100.0	
고위공무원	56	33			13			10		76.8	
공무원	144	35	10		11		70	18		85.1	
군인·경찰	15	7	1		2	(2)	4	1		100.0	
전문직 종사자	68	28		2	8			22	8	73.5	
문화예술인	56	12			14		12	15	3	61.4	
종교인	12	4			4		4			50.0	
회사원	154	82	9		15		23	20	5	84.7	
언론인	34	7			25			2		26.5	
교육자	118	34	3		35		6	3	36	1	67.0
개인사업가	160	50	3		51		24	29	3	60.3	
연예인	10	4		6						40.0	
학생	47	16	4				8	19		100.0	
시민활동가	20	7			13					35.0	
조합대표(협회장)	16	6			3			5	2	68.8	
기타	483	68	12	2	93	(6)	80	14	173	41	66.6
계	1,699	520	42	14	392	(8)	204	44	413	70	67.7

※ 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정치인,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고위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

표 7 공인 및 일반개인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공인 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공 인	362	160		4		118				73	7	64.4
일반개인	1,337	360	42	10		274	(8)	204	44	340	63	68.9
계	1,699	520	42	14		392	(8)	204	44	413	70	67.7

※ 공인은 개인 직업별 분류 중 정치인,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다.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신청 조정사건이 441건(29.9%)으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조합 및 협회 119건(8.1%), 공공단체 100건(6.8%), 지방자치단체 85건(5.8%) 등의 순으로 조정사건이 많았다.

단체별 피해구제율은 조합 및 협회가 8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75.3%), 교육기관(73.0%), 공공단체(71.0%) 등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단체는 정당(40.0%)이었는데, 청구된 건수가 25건으로 표본이 적었으며 그 중 15건(60.0%)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 영향이었다.

표 8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단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32	8	1			16				7		50.0
지방자치단체	85	50	5			21				9		75.3
공공단체	100	64				17				7	12	71.0
정당	25	4				15				6		40.0
조합 및 협회	119	69		4		10		2		32	2	86.3
종교단체	28	8				8				8	4	57.1
일반기업체	441	102	16	12		124		6	6	157	18	64.1
언론사	39	20	3	2		11		1	2			63.9
교육기관	37	19				6				8	4	73.0
노동조합	60	30	2	2		18		2		6		65.5
기타 일반단체	510	55				46		235	141	33		65.7
계	1,476	429	27	20		292		246	149	273	40	67.4



6.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피신청인 매체 유형을 기준으로 조정사건 비율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1,857건(58.5%)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는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450건(14.2%), 방송 387건(12.2%), 신문 309건(9.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2,456건(77.4%)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피신청인 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매체는 뉴스통신(78.3%)이었고, 이어서 인터넷신문(74.2%), 신문(64.0%) 등의 순이었다.

표 9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309	141	14	7		93	(1)	12		34	8	64.0
방 송	387	107	7	5		115	(4)	56	35	31	31	50.3
잡 지	6	3				2					1	50.0
뉴스통신	149	45				25		23	6	49	1	78.3
인터넷신문	1,857	532	42	17		322	(1)	286	107	511	40	74.2
인터넷뉴스서비스	450	121	6	5		119	(2)	71	38	61	29	55.7
기 타	17					8		2	7			
계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7. 인터넷 기반 매체 및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신청된 2,456건 중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1,370건(55.8%)이었다. 이 가운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합의로 인터넷 상에서 원 조정대상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한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례는 477건(34.8%)으로 확인됐다.

2022년 전체 조정사건 중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352건이었으며, 이 중 언론사의 본 매체 보도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부가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338건(표 9. 방송 등에 포함)이었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4건(표 9. 기타에 해당)이었다.

한편 위원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7월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언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채널은 조정대상매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표 10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사건 현황 (2022. 1. 1. ~ 2022. 12. 31.)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 (A)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B)	비율 (B)/(A)
2,456	1,370	477	34.8%



8.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조정사건은 언론보도로 인한 신청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3,093건(97.4%)이 신청됐다. 초상권·음성권·성명권·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는 60건(1.9%), 그 밖에 재산상 손해 및 기타 조정사건은 22건(0.7%)이었다.

명예훼손을 제외한 기타 인격권 중 음성권과 성명권 침해 관련 조정사건은 조정사건 수가 각 2건으로 많지는 않았으나 100%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사건은 95.1%, 사생활 침해로 인한 조정사건은 60.0%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재산상 손해에 따른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57.1%였다.

조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 명예훼손의 피해구제율은 67.2%였다. 사건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정성립이 924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조정불성립결정 675건(21.8%),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653건(21.1%) 등의 순이었다.

표 11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093	924	67	34	675	(8)	442	193	653	105	67.2
초상권 침해	41	19	1						19	2	95.1
음성권 침해	2	2									100.0
성명권 침해	2		1						1		100.0
사생활 침해	15				3				9	3	60.0
재산상 손해	19	4			6		5		4		57.1
기 타	3						3				
계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침해유형은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통계는 신청인이 주된 침해로 선택한 유형 기준으로 작성

9.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린 조정사건은 103건이었다. 이 중 서울 중재부는 59건(57.3%), 지역중재부는 44건(42.7%)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사건은 69건(67.0%), 이의신청된 조정사건은 34건(33.0%)으로, 3건 중 1건의 비율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이의신청의 주체는 신청인이 8건(7.8%), 피신청인이 14건(13.6%)이었고, 양당사자가 모두 이의신청한 조정사건은 12건(11.7%)이었다.

표 12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구분	건수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동의	이의			소계
			신청인 이의신청	피신청인 이의신청	양당사자 이의신청	
서울	59	41	8	10		18
지역	44	28		4	12	16
계	103	69	8	14	12	34

10. 기각 및 각하 사유

기각된 450건의 조정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중재부가 신청인과 조정대상보도 사이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337건(74.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87건(19.3%),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보도내용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지엽말단적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 정도가 미미한 경우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인 경우가 각 8건(1.8%) 등이었다.

각하로 종결된 사건은 총 193건이었는데, 언론중재법상 신청 가능한 기간을 넘겨 접수된 사건이 185건(95.9%)으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 외 사유로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매체가 아닌 경우 4건(2.1%),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2건(1.0%) 등이었다.



표 13 기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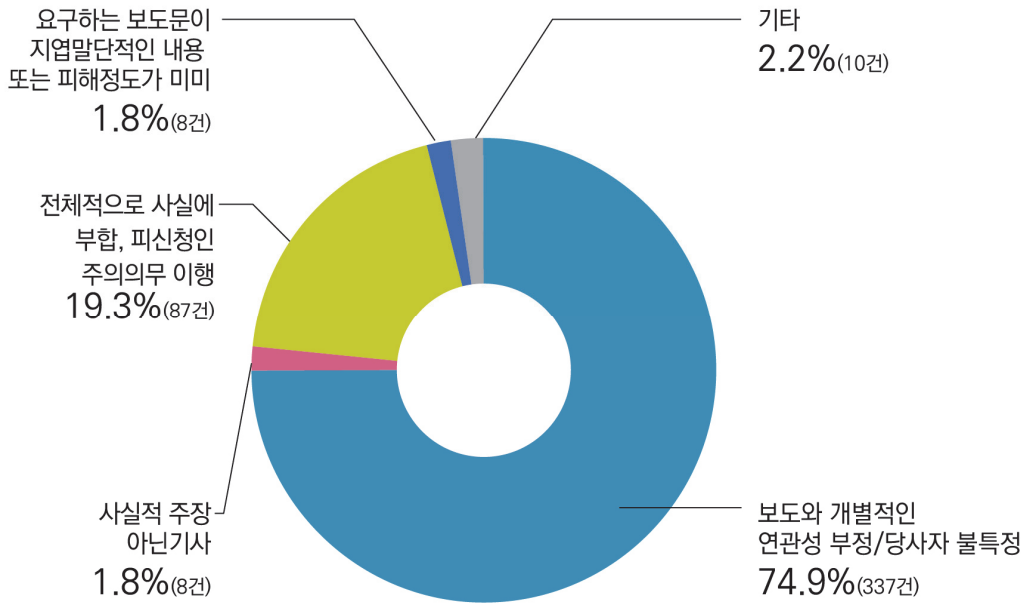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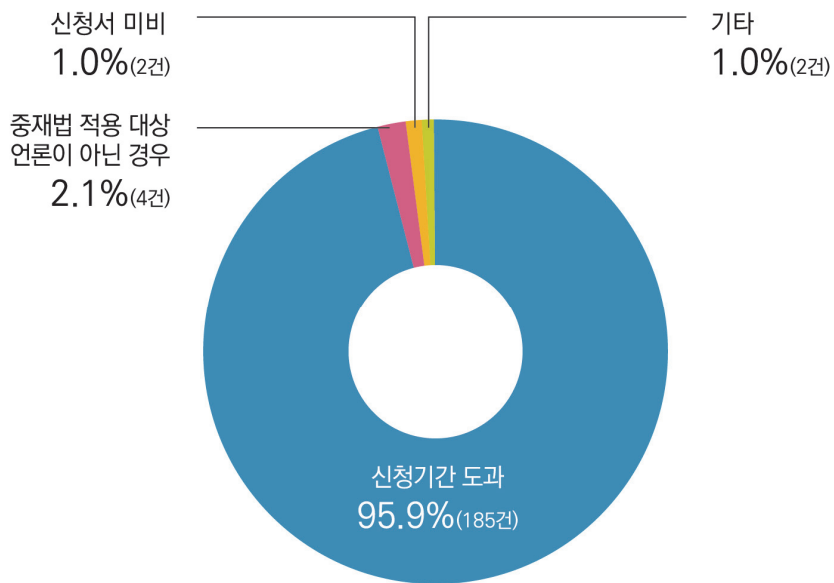


표 14 각하 사유



11.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가. 게재 유형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된 사례는 총 806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문, 방송, 잡지에 보도된 경우는 125건(15.5%), 인터넷 기반 매체인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경우는 681건(84.5%)이었다.

신문, 방송, 잡지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에서는 문제가 된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또는 프로그램에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방송한 사례가 98건(78.4%)이었다. 원 보도와 다른 별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게재·방송된 사례는 23건(18.4%), 언론사의 자체 정정·반론보도 지면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게재·방송된 사례는 4건(3.2%)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들의 경우 원보도 하단과 함께 별도기사로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한 사례가 458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원보도 하단에만 게재된 경우 112건(16.4%), 별도기사로만 게재한 경우 111건(16.3%) 순이었다.

표 15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신문, 방송,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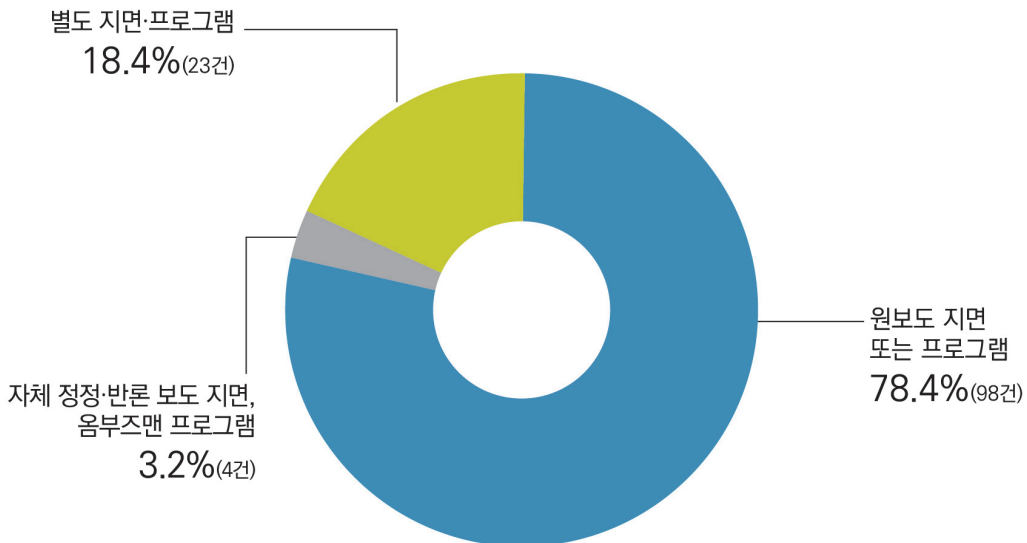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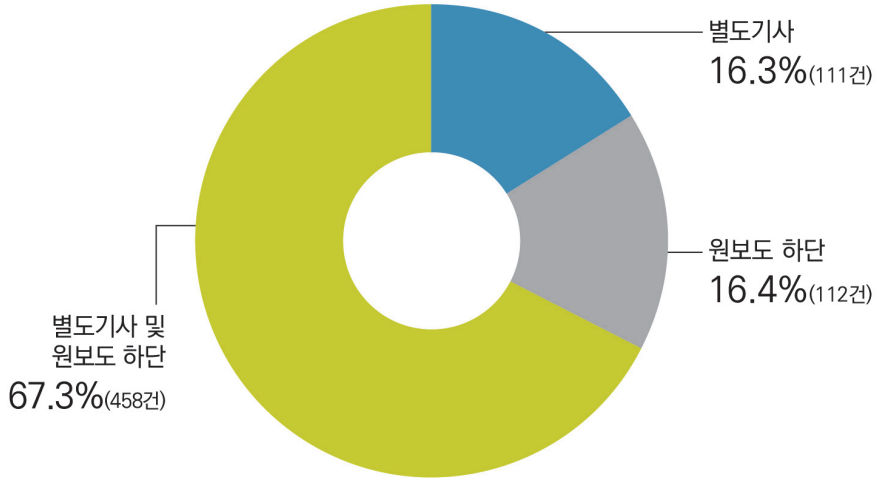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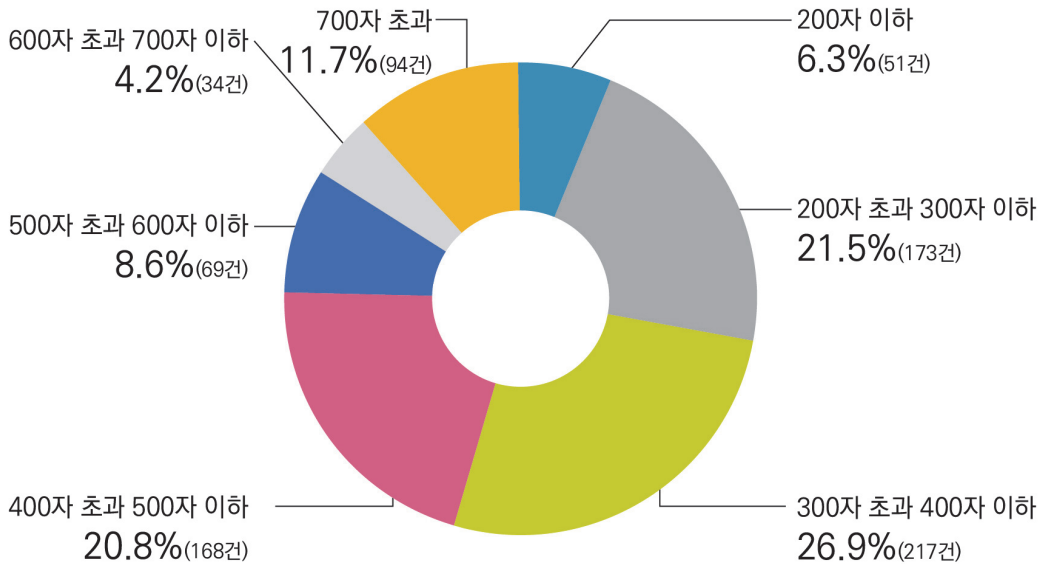
표 16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뉴스통신, 인터넷신문, IPTV, 인터넷뉴스서비스)



나. 보도문 길이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된 80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도문 길이는 주로 200자에서 500자 사이였다. 세부적으로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217건(2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200자 초과 300자 이하 173건(21.5%), 400자 초과 500자 이하 168건(20.8%), 700자 초과 94건(11.7%) 순이었다.

표 17 피해구제보도문 길이



12.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정사건 1,009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8건(1.8%)이었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원부터 최고 2,200억 원까지 분포하는 등 큰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 청구액은 약 3억 7천만 원, 중앙액은 2천만 원이었다.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등으로 금전배상이 인용된 액수는 최저 50만 원, 최고 1천만 원이었다. 평균 조정액은 약 250만 원이었으며, 중앙액은 2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1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4건(22.2%), 음성권 침해 2건(11.1%), 성명권 침해 1건(5.6%)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손해배상 최고액인 1천만 원이 지급된 조정사건은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표 18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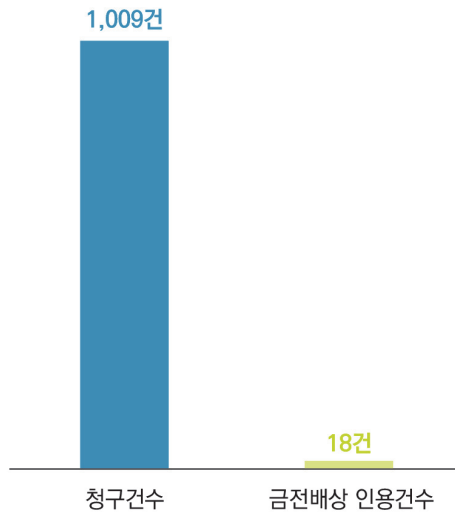


표 19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22. 1. 1. ~ 2022. 12. 31. /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청구액	1	220,000,000,000	372,306,712	20,000,000
조정액	500,000	10,000,000	2,592,857	2,000,000



표 20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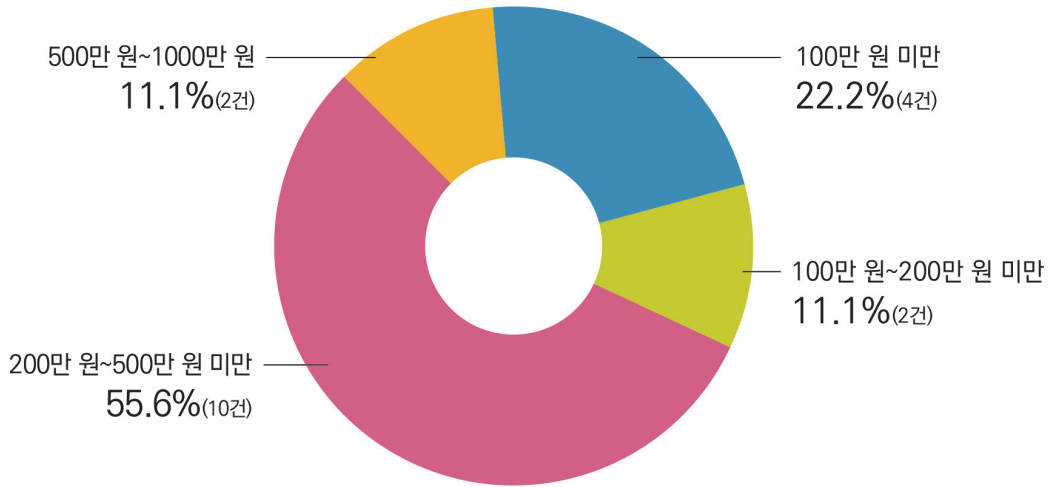


표 21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2. 1. 1. ~ 2022.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1	500,000	10,000,000	3,250,000	2,250,000	2,000,000
초상권 침해		4	500,000	1,000,000	825,000	900,000	900,000
음성권 침해		2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성명권 침해		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